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95

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 권칠승·박용갑·전진숙

송옥주 • 민병덕 • 윤종군

한민수 · 정준호 · 전용기

김준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는 「법률안 표준화 기준」(국회지침)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'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'이라는 법정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 또한,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등은 불법행위를 한 협동조합 임원은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 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38조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8조 중 "2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8조(벌칙) 조합, 사업조합, 연	제138조(벌칙)
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	
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	
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	
대부(貸付)하거나 투기 거래의	
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	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	<u>3천만원</u>
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	
병과(倂科)할 수 있다.	